

[별지 제3호서식] (규칙 제2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3. 2. 24.>

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					
선거명					
(예비후보자) · (후보자)	성명 (한자)		생년월일 (성별)		
	주소		전화번호 (이동전화번호)		
교육경력 등					
구분	경력명	경력기간			비고
		년월일 ~ 년월일	기간	소계	
교육경력			년월	년월	
			년월		
			년월		
교육행정경력			년월	년월	
			년월		
			년월		
합계					
첨부 : 교육경력·교육행정경력 증명서 부. 년 월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따라 교육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위 (예비후보자)·(후보자) (인) ○○ 선거관리위원회 귀중					

주 : 1.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2.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증명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말합니다.